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5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안호영 · 김우영 · 이수진
민병덕 · 이용우 · 정태호
차지호 · 이학영 · 박 정
장종태 · 조정식 · 이춘석
문대림 · 김원이 · 박홍배
박지혜 · 최혁진 · 박해철
김주영 · 김태선 · 추미애
김문수 의원(22인)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

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으로서의 공원자원을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함(안 제2조, 제3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

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라.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보전·관리를”을 “보전·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각각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환경개선에 관한”을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u>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u>
제18조(용도지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5. 삭제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3. (현행과 같음)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나. (생 략) <신 설>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 제 ④·⑤ (생 략)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 관리청은 자연공원의 <u>자연자원</u>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u>자연자원</u>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u>환경개선</u>에 관한 비용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u> 라. ----- <u>보전·관리 및 이용</u>을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 ----- <u>공원자원</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원자원</u> -----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조) ----- ----- -----. 1. (현행과 같음) 2. ----- ---- <u>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u>에 소요
---	--

3. (생략)	<u>되는</u> --- 3. (현행과 같음)
---------	---